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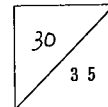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2	16	1995. 7. 20	총재 김 영 호

의안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중 일부를 시행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
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생 략)

「금융기관 여수신에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

현	행	개	정	(인)	비	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조 ~ 제5조 (생 략) (신 설)		제1조 ~ 제5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. 7. 24부터 시행한다 2. (경과조치) 1995. 7. 23이전에 계약된 6개월이상 1년미만 만기 정기예금,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</th><th>분</th><th>이</th><th>율</th></tr> <tr> <td>1. 정기예금</td><td colspan="3"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</td></tr> <tr> <td>2. 저축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3. 자유저축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4. 기계당좌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5. 기업자유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6. 보통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7. 별단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8. 당좌예금</td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able>							구	분	이	율	1. 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	2. 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	3. 자유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	4. 기계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	5. 기업자유예금	(현행과 같음)			6. 보통예금	(현행과 같음)			7. 별단예금	(현행과 같음)			8. 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자유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기계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기업자유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보통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별단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</th><th>분</th><th>이</th><th>율</th></tr> <tr> <td>1. 정기예금</td><td colspan="3"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</td></tr> <tr> <td>2. 저축예금</td><td colspan="3">연 3.0% (개인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>3. 자유저축예금</td><td colspan="3">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</td></tr> <tr> <td>4. 기계당좌예금</td><td colspan="3">연 1.0% (개인에 한함)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</td></tr> <tr> <td>5. 기업자유예금</td><td colspan="3">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>6. 보통예금</td><td colspan="3">연 1.0%</td></tr> <tr> <td>7. 별단예금</td><td colspan="3">원칙적으로 무이자 다만, 오토리시 연 2.0%</td></tr> <tr> <td>8. 당좌예금</td><td colspan="3">무이자</td></tr> </table>							구	분	이	율	1. 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	2. 저축예금	연 3.0% (개인에 한함)			3. 자유저축예금	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	4. 기계당좌예금	연 1.0% (개인에 한함)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			5. 기업자유예금	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	6. 보통예금	연 1.0%			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 다만, 오토리시 연 2.0%			8. 당좌예금	무이자		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1년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저축예금	연 3.0% (개인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자유저축예금	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기계당좌예금	연 1.0% (개인에 한함)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기업자유예금	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보통예금	연 1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 다만, 오토리시 연 2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당좌예금	무이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시행일자 명시

- 시행일전에 계약된 정기예금 (6개월 ~ 1년미만), 정기적금 (1 ~ 2년미만) 및 상호부금 (1 ~ 2년미만)에 대하여는 종전 최고이율 적용

- 6개월이상 1년미만 만기 금리 자유화

현		행		개		정		비	
구	분	이	물	구	분	이	물		고
9	정기적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2년 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.5% (지방은행은 연 9.0%)		9.	정기적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이상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0.	근로저장기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0.	근로저장기저축	(현행과 같음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1.	근로저축마련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2년 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.5%		11	근로저축마련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이상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2.	장기주택마련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계약기간은 10년)		12.	장기주택마련저축	(현행과 같음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3.	상호부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2년 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.5%		13	상호부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이상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4	주택부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2년 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8.5%		14.	주택부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이상)		-	금리 전면 자유화
15.	산업어음일반매출	연 7.0%. 다만,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5.	산업어음일반매출	연 7.0%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2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금리가 자유화된 거래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일반매출의 최대한기 단축 및 최저발행금액 인하
16	무역어음일반매출	연 7.0% 다만,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6	무역어음일반매출	연 7.0%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2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